

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

1 굴착공사 계획 신고



2 접수번호 발급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회합 · 공동표시



표시 · 단독표시

4 굴착공사 개시 통보



5 굴착공사 시행



도시가스, 고압가스, LPG배관망공급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굴착공사 신고 방법

전 화 : 1644-0001 (전국 동일)

인터넷 : www.eocs.or.kr

모바일 : m.eocs.or.kr

A P P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www.eocs.or.kr
m.eocs.or.kr



굴착공사신고 편의와 도시가스배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고압가스
배관 보호를 위한

굴착공사 신고는
1644-000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법령 위반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
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위치와, 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이상인 경우.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모든 굴착공사는 전화 **1644-0001** 로 반드시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1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 제외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02 신고 내용

굴착공사 발주사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 액화석유가스 시행규칙 제72조의 4

신고방법



인터넷
www.eocs.or.kr



전화
1644-0001



모바일웹
m.eocs.or.kr



APP
굴착공사정보
지원시스템

03 위치 확인방법 결정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고압가스사업자 등은 해당 굴착현장 위치 및 매설된 가스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EOCSS시스템
에 입력합니다.

04 배관 표시 방법

만나서 표시하기로 한 경우(회합)

굴착
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LPG배관망공급사업자, 고압가스사업자
등의 입회하에 굴착공사 예정 지역에는 흰색 페인트,
매설된 가스 배관 직상부에는 **황색(도시가스, LPG)** 및
청색(고압가스)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된 배관의 위치표시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표시하기로 한 경우(표시)

굴착
공사자

굴착공사 예정지역을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알려야 합니다.

도시가스
LPG
배관망공급
고압가스
사업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공사 위치표시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배관 직상부에
황색(도시가스, LPG) 및 **청색(고압가스)** 표시를 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05 굴착공사의 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하여
도 좋다”**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가능 여부를
통보 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에 입회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